

과징금 산정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연간 총수입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의료기관인 경우

과징금처분 전년도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배아생성 행위 또는 유전자 치료 행위로 생긴 총 진료비(건강보험+환자본인부담금)의 합계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처분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과징금처분 전년도의 총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의료기관 외의 감독대상기관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과징금 기준

등 급	연간 총수입 금액(단위: 백만원)	1일 과징금(단위: 원)
1	50 이하	75,000
2	50 초과 ~ 100 이하	112,500
3	100 초과 ~ 200 이하	150,000
4	200 초과 ~ 300 이하	187,500
5	300 초과 ~ 400 이하	225,000
6	400 초과 ~ 500 이하	287,500
7	500 초과 ~ 600 이하	325,000
8	600 초과 ~ 700 이하	350,000
9	700 초과 ~ 800 이하	375,000
10	800 초과 ~ 900 이하	400,000
11	900 초과 ~ 1,000 이하	425,000
12	1,000 초과 ~ 2,000 이하	437,500
13	2,000 초과 ~ 3,000 이하	450,000
14	3,000 초과 ~ 4,000 이하	462,500
15	4,000 초과 ~ 5,000 이하	475,000
16	5,000 초과 ~ 6,000 이하	487,500
17	6,000 초과 ~ 7,000 이하	500,000
18	7,000 초과 ~ 8,000 이하	512,500
19	8,000 초과 ~ 9,000 이하	525,000
20	9,000 초과	537,500

